

국토정책 Brief

KRIHS ISSUE PAPER



KRIHS POLICY BRIEF • No. 797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강현수 • www.krihs.re.kr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김수진 부연구위원, 진영호 두리공간연구소 소장

주요내용

- 1 도시 내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물리적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거점공간 조성 필요**
 - 2015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가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거점공간(마을회관, 커뮤니티시설, 공동홀, 문화·복지 시설, 소득창출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 파악은 미흡한 실정
- 2 거점공간의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결과**
 - 행정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공동홀, 문화·복지 시설 등)에 초점을 맞추면 준공과 동시에 공간 활용도가 높음
 - 주민조직 주도로 소득창출시설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주안점을 두면 일부에서 미운영, 운영지연 등의 현상 발생
- 3 자주적 운영관리에 대해 대전 OO마을 등 4개 사례 분석결과**
 - 주민조직 설립 및 활성화 현황과 거점공간의 조성·운영 현황 간 관계 맞는 방식에 따라 공동체의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이 달라짐
 - 해당 사업대상지의 경우 대부분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이 행정지원, 정보공유 또는 목적·수단 설정에 그침
 - 수준향상을 위한 장기과제인 역량강화에 앞서 단기과제로 운영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할 시점

정책제안

- ① (사업 선정평가 시 운영관리계획 제출)** 도시새뜰마을사업 선정평가 시 거점공간의 조성계획과 함께 운영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운영주체, 사용·위탁 방식과 관련 근거, 운영관리비 조달방식 등을 기술
 - 운영관리계획이 미비한 경우, 거점공간 조성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성 자체를 제한
- ② (운영관리예산 사전 책정)** 도시새뜰마을사업 추진 시 전체 예산의 10~20%를 운영관리비로 사전 책정하여 필요시 후속사업 연계·공모 준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
 - 다만, 운영관리예산 사전 책정에 앞서, 주민조직의 역량 부족 시 거점공간 내 소득창출시설 도입 제한
- ③ (관련 법규정 적용을 위한 원칙 수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조항에 따라 수익발생 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지불해야 하나,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지자체 조례를 제·개정하여 감면 혜택 확대
 - 적절한 근거 마련 선행을 원칙으로 삼고, 적법한 사용허가절차 없이 공간사용 시 시정조치를 시행

1. 거점공간 조성 현황

거점공간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정책목표

(개념) 해당사업 예산이 투입되어 건축된 건축물로서 공동체 구성원이 모여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

- 도시새뜰마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 내 해당사업 예산으로 건축된 건축물로 하나의 개발단위를 하나의 거점공간으로 간주
- 마을회관(경로당), 커뮤니티센터, 공동홈, 문화·복지 시설(도서관, 건강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도입되어, 주민교류 활성화, 공공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공동체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

(필요성) 마을공동체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물리적 장소로,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성 형성에 기여

(정책목표) 마을공동체 단위로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조직을 육성하여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지원

거점공간 조성 현황

(조성계획) 2020년 기준 63개 지구에서 총 84개의 거점공간 조성

- 지구는 63개이나 단일지구에서 다수(2~4개)의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지구가 17개
- 46개 지구(전체 73%)가 1개 거점공간, 14개 지구(전체 22%)가 2개 거점공간, 2개 지구가 3개 거점공간, 그리고 오직 1개 지구만이 4개 거점공간을 조성

(도입시설) 기능은 크게 주민공동이용시설, 소득창출시설, 공동홈, 문화·복지 시설, 지원센터로 구분

-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이 스스로 운영관리하는 다목적실, 마을회관, 사무실 등을 의미
- (소득창출시설) 식당, 카페, 제빵, 목공방,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은 공동작업장 등을 포괄
- (공동홈) 일종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일정 기준 충족 시 입주자격 부여
- (문화·복지 시설) 작은도서관, 전시시설, 건강센터 등으로 행정이 불특정 다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관리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포함
-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복지관, 자활센터, 마을지기사무소 등 포함

표 1 거점공간 내 도입시설 현황

선정 년도	도입시설 수	주민공동이용시설	소득창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소득창출시설+α	공동홈	주민공동이용시설+ 소득창출+공동홈	기타
2015	38	6	5	18	-	2	7
2016	31	11	6	11	1	-	2
2017	15	6	3	6	-	-	-
합계	84	23	14	35	1	2	9
		준공 17 준공 전 6	준공 8 준공 전 6	준공 22 준공 전 13	준공 전 1	준공 2	준공 9

출처: 김수진 외 2020, 34 (원자료는 2020년 7월~8월 진행된 전화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준공 현황) 63개 지구-84개 거점 중에서 43개 지구-58개 거점(약 70%)이 준공 완료

- 연내 52개 지구(연내준공 완료가 예상되는 지구 수는 55개이나, 중복해 선정된 3개 지구를 제하면 총 52개)-72개 거점 (약 85%) 준공 완료 예상
- 23개 지구-26개 거점이 착공 전이거나 공사 중(연내 준공 예정 포함)

표 2 2020년 기준 거점공간 준공 현황

선정년도	선정지구	거점 없음	지구 대비 거점 수	준공완료 지구·거점	연내준공 예정 지구·거점	착공 전+공사 중 지구·거점
2015	30	2	28개 지구 38개 거점	23개 지구 30개 거점	4개 지구 6개 거점	2개 지구 2개 거점
2016	22	-	22개 지구 31개 거점	15개 지구 23개 거점	4개 지구 4개 거점	4개 지구 4개 거점
2017	14	1	13개 지구 15개 거점	5개 지구 5개 거점	4개 지구 4개 거점	5개 지구 6개 거점
합계	66	3	63개 지구 84개 거점	43개 지구 58개 거점	12개 지구 14개 거점	11개 지구 12개 거점

출처: 김수진 외 2020, 36 (원자료는 2020년 7월~8월 진행된 전화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거점공간 운영관리 현황과 문제점

거점공간 운영관리 현황

(운영 현황) 43개 지구에서 58개 거점 준공

- 55개 거점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개시
 - 미운영 3개 거점을 제외한 55개 거점에서 신규운영(24개 거점), 기 운영유지(9개 거점), 운영예정(9개 거점), 임시사용(6개 거점), 기타(7개 거점) 등의 형태로 운영계획 수립하거나 운영개시
- 미운영 및 운영지연 사유 발생
 - 운영주체 미설립 또는 부적절로 인해 거점 전체 또는 거점 일부가 미운영인 거점은 6개, 임시사용 중인 거점은 8개로 총 14개 거점이 무상사용 및 위탁을 검토할 단계에 미달, 운영주체가 설립됐더라도 무상사용·위탁의 근거가 미비해 근거 마련을 위한 운영지연, 그 외 주민 고령화, 내부시설 및 집기 미조성이 원인
- 준공 후 운영개시까지 기간 연장
 - 운영 중인 31개 거점(24개 거점 + 거점 일부 7곳) 중 준공 후 3개월 이내 운영이 시작된 시설은 대부분 마을회관(경로당), 행정이나 지역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인 반면, 주민조직이 소득창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전후에서 1년 전후 기간이 소요되며 길게는 2년 넘게 소요

(운영방식) 운영주체가 행정인 경우 행정사용과 행정직영, 민간인 경우 사용허가절차 없이 무상사용과 사용허가절차 이행 후 사용으로 구분(〈그림 1〉 참조)

- (행정 사용 및 직영) 행정사용은 4곳, 행정직영은 5곳
- (민간-사용허가절차 없이 무상사용) 운영 중인 31개 거점 중 11개 거점
- (민간-사용허가절차 이행 후 사용) 무상사용-무상위탁은 10개 거점, 무상사용-유상위탁은 6개 거점, 유상임대-무상위탁은 6개 거점, 유상임대-유상위탁은 1개 거점

거점공간 운영관리상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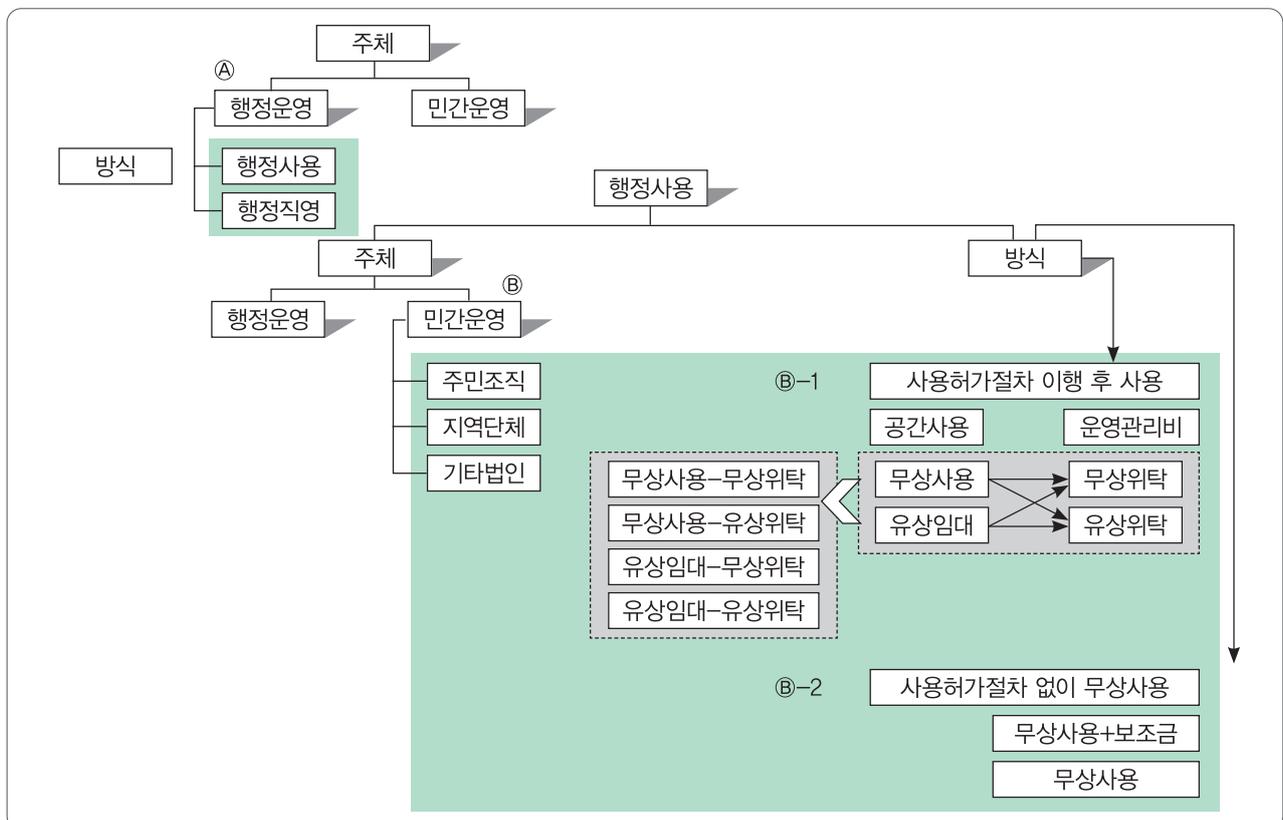
도입시설과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개시까지 시간적 간극 발생

- (도입시설 현황) 51개 소득창출시설 중 37개 거점이 하나의 거점 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소득창출시설을 도입하여 복합기능을 담당하는 시설 조성
- (미운영 및 운영지연) 총 14개 거점이 운영주체가 설립되지 못하거나 부적절해 운영방식 검토 전 단계에 고착
 - 대표적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조직화 과정에 있는 경우, 주민들 간 소득창출사업에 대한 갈등 및 협의 불발로 거점공간의 기능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운영주체 미설립 또는 부적절 상황에 고착
 - 주민조직이 소득창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건물 준공 이후 주민조직 설립이 본격화되는데 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와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준공 이후 논의하는 경우 발생
 - 애초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거점공간이 방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용도가 정해진 이후라도 내부 리모델링이나 집기류 등을 정비해야 하므로 시간뿐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을 내포

사용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더라도 무상사용에 대한 적절한 근거 마련 미비

- (사용허가절차 미이행) 소득창출시설을 포함하여 사용수익허가,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 중
 - 운영 중인 31개 거점 중 소득창출시설을 포함한 11개 거점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조치가 필요
- (무상사용의 근거 미비) 새마을사업은 근거법이 없어 무상사용은 개별법에 의거하여 근거 마련 필요

그림 1 운영주체별 방식



출처: 김수진 외 2020, 45 (원자료는 2020년 7월~8월 진행된 전화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자주적 운영관리 사례연구 및 유형 구분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자주적 운영관리로 전환의 필요성과 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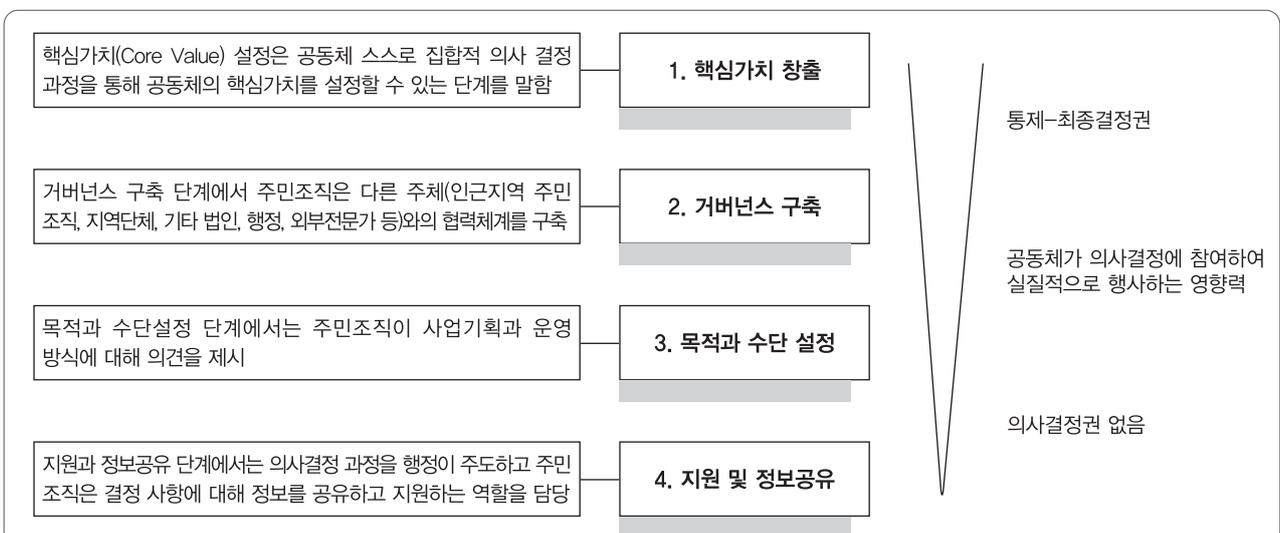
자주관리(Self-management)의 개념

- 프랑스 맑스주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2003)는 자주관리 개념을 일반화하여 일상생활에서 공간을 생산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주장
- 르페브르의 혁명적 개념을 거점공간의 조성 및 운영이라는 맥락하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제적 개념, 즉 자주적 운영관리로 축소·사용
- 자주적 운영관리란 도시새뜰마을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지 주민이 조직화하여 거점공간의 조성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을 스스로 관리·통제하는 것을 의미
- 자주적 운영관리의 수준은 행정지원과 정보공유(4단계), 목적과 수단 설정(3단계), 거버넌스 구축(2단계), 핵심 가치 설정(1단계)으로 구분(그림 2) 참조

사례분석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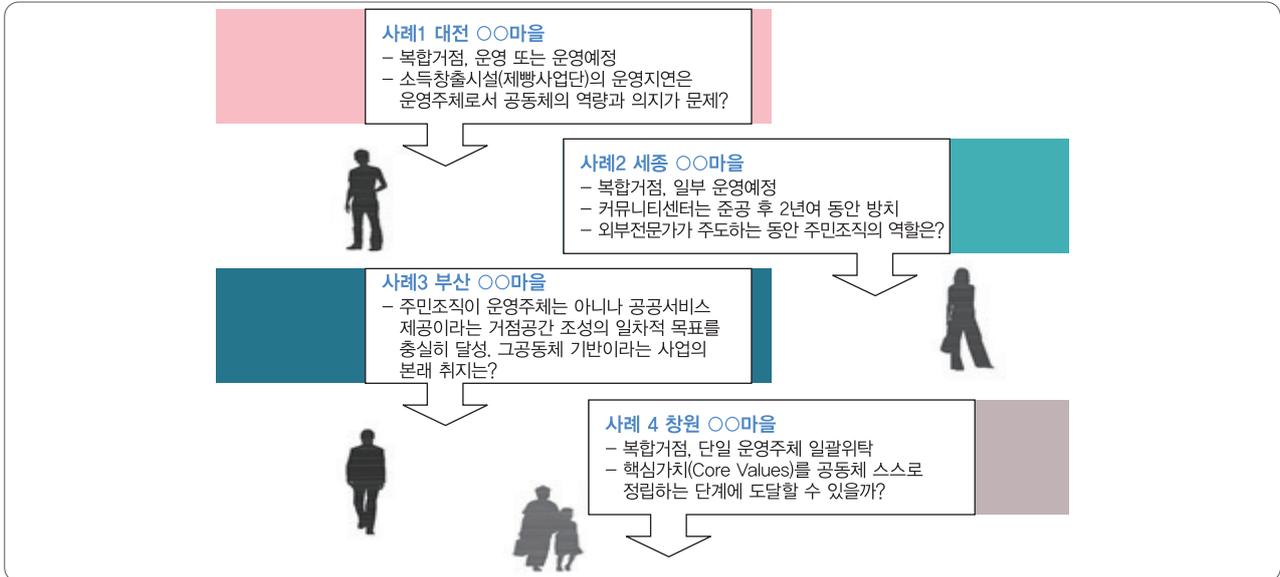
- 사례별로 주민조직 현황과 운영관리 현황에 따라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자주적 운영관리의 수준에 따라 정책방향을 제시(표 4) 참조
- (주민조직 현황) 주민조직의 구축현황을 비활성화와 활성화로 구분하고, 주체 간 협력관계 구축 현황을 검토
 - 주체 간 협력관계는 다시 행정 주도 + 주민조직 지원, 외부전문가 주도 + 주민조직 지원, 행정 주도, 공동체 주도 + 외부전문가 지원으로 구분
- (운영관리 현황) 거점공간의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은 단일거점·복합거점, 도입시설, 운영개시 여부, 운영방식, 운영주체 등을 검토
- (유형 구분) 주체 간 협력관계와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을 두 축으로 놓고 유형을 구분

그림 2 자주적 운영관리의 사다리



출처: 김수진 외 2020, 60 (원자료 Davidson, Colin, H, et al. (2007)의 보고서 내용 중 Arnstein(1969)과 Choguill(1996)를 적용한 공동체 참여의 사다리 103쪽 그림을 참조·차용하여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을 다이어그램으로 저자가 재작성).

그림 3 사례별 질문



출처: 김수진 외 2020, 66 (원자료는 2020년 5월말~10월초 진행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사례별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표 3〉과 〈표 4〉 참조)

○ (대전 ○○마을) 유형1-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3

- (주민조직 설립 및 활성화 현황) 소득창출시설의 운영관리를 둘러싸고 공동체 참여의지·역량에 대해 검토 필요
-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 공간의 용도 및 사용자가 일부 불분명한 상태로, 공공성 확보 이슈 검토 필요
-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3)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운영관리의 목적과 수단을 설정하고자 하나, 공동체 참여의지 또는 역량이 미흡한 단계

○ (세종 ○○마을) 유형2-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4

- (주민조직 설립 및 활성화 현황) 지자체와 운영관리 관련이 일련의 합의에 이르렀는지 확인할 필요
-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 일부 공간은 2년여 방치 이후 연계사업 공모를 통해 2020년 하반기 운영개시
-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4) 운영관리의 주체가 행정 또는 민간이며 공동체는 지원 및 정보공유 등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계

○ (부산 ○○마을) 유형3-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4

- (주민조직 설립 및 활성화 현황) 해당사업 예산이 투입된 거점공간의 운영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 행정직영인 두 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케어안심주택은 해당지역 주민들로 돌봄인력을 확충하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공동체 참여를 유도

○ (창원 ○○마을) 유형4-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2

- (주민조직 설립 및 활성화 현황) 공동홈 입주자 선정과정이 공동체성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공동홈 전체 운영관리를 일괄 위탁
-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2) 공동체 스스로 운영관리의 목적과 수단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공동체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단계

표 3 유형별 장단기 정책제안

사례	주민조직 설립 및 활성화 현황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	유형	협력	수준	장단기 정책제안	
대전 ○○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뜰마을사업으로 협동조합 설립 기존 주민협의체 기반 조직 고령·소득창출 사업에의 참여의지 ↓역량 ↓ 행정과 조직 간 의견조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공간 조성 완료 공동홈: 행정직영 / 운영개시 주민공동이용시설: 무상위탁 / 운영개시 소득창출시설: 사용수익허가절차 후 무상사용 / 운영지연 	유형 1	행정 주도 + 주민 조직 지원	수준 3 목적과 수단 설정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관리계획이 미비한 경우, 사전에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성 자체를 제한 조성계획 검토 시 주민조직의 설립 여부 및 역량에 따라 거점공간 내 도입시설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적 운영관리에 미치는 요인 공동체 구성원 참여의지 ↓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공간에 대한 주민의식 부재 공공성 확보 문제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역량강화 전담부서 신설 또는 연결 지자체 내 관련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공동체 내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확보
세종 ○○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회와 주민협의체는 별도이며 현재 주민협의체는 해체됨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조직된 협동조합은 2018년 말 설립되었으나 커뮤니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 연계사업의 용역업체인 공공프리즈이 위탁형태의 운영주체로 활동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공간 조성 완료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마을회 운영 중 소득창출시설: 운영주체가 없어 2년 반 방치됨 	유형 2	외부 전문가 주도 + 주민 조직 지원 외부	수준 4 행정 지원 및 정보 공유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관리계획이 미비한 경우, 사전에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성 자체를 제한 조성계획 검토 시 주민조직의 설립 여부 및 역량에 따라 거점공간 내 도입시설 제한 사업 추진 시 전체 예산 10~20%를 사전 책정하여 후속사업 연계를 위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적 운영관리에 미치는 요인 운영주체 불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가의 한시적 공간사용 공동체 내외부 운영조직 간 갈등 관리를 위한 지원조직 부재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역량강화 전담부서 신설 또는 연결 지자체 내 관련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공동체 내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확보
부산 ○○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천마을 전체 주민협의체는 활성화되었으나, 거점공간의 운영주체로 활동하지는 않음 행정 직영으로 운영되며, 기타 문화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역할 충실히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공간 조성 완료 문화복지시설 위주로 행정직영/운영개시 공동홈에서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하여 허가 없이 무상사용 	유형 3	행정 주도	수준 4 행정 지원 및 정보 공유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관리계획 검토 시 사용허가 절차 이행 후 사용 및 적절한 근거 마련 선행의 원칙 수립 사업 추진 시 향후 유연한 용도변경을 고려하여 거점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적 운영관리에 미치는 요인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주민협의체 중심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공동체 특성에 맞는 시설 도입 및 유기적 연계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뜰마을사업 내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의 궁극적 목적(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 및 논의 필요
창원 ○○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기반 운영관리 거버넌스 구축 협동조합 준회원으로서 외부전문가 및 행정가는 공간의 사유화를 견제하고 공공성 확보를 담보하는 역할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공간 조성 완료 공동홈 무상위탁 	유형 4	공동체 주도 + 외부 전문가 지원	수준 2 거버넌스 구축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관리계획 검토 시 사용허가 절차 이행 후 사용 및 적절한 근거 마련 선행의 원칙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적 운영관리에 미치는 요인 주민의식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지분 소유의 재산권 보장에서 거주권 중심으로 전환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주체로서 공동체가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공동체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출처: 김수진 외 2020, 100 (원자료는 2020년 5월 말~10월 초 진행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 유형 비교

구분	주체 간 협력관계			
	행정 주도 + 주민조직 지원	외부전문가 주도 + 주민조직 지원	행정 주도	공동체 주도 + 외부전문가 지원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1 핵심가치 창출			
	수준2 거버넌스구축			유형4
	수준3 목적과 수단 설정	유형1		
	수준4 행정지원 및 정보공유		유형2	유형3

출처: 김수진 외 2020, 89 (원자료는 2020년 5월 말~10월 초 진행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방안

장단기 목표별 정책제안

사업단계별로 원칙과 정책수단 제시

-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 거점공간 조성계획과 함께 운영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제출된 계획이 미비할 경우 사전에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성 자체를 제한
- **(조성계획 검토)** 조성계획 검토 시 주민조직의 설립 여부, 공동체 참여의지와 역량 등을 고려하여 도입시설의 유형(예: 소득창출시설)을 제한
- **(운영관리계획 검토)** 사용허가절차 이행 후 사용, 그리고 적절한 근거 마련 선행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수립하고 원칙에 따라 운영관리계획의 현실화 가능성 평가
- **(사업 추진 초기-예산안 검토)** 전체 예산의 10~20%를 운영관리비로 사전 책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후속사업 연계 도모를 위한 인력확보에 사용
- **(마스터플랜 수립단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수 발생을 고려하여 향후 유연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공간 조성 및 사업기획

우선순위별 운영관리방안

- 거점공간의 운영관리계획이 미비한 경우 사전에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성 자체를 제한
- 공간규모 검토 시 주민조직의 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직영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도입만 허용
- 무상사용·위탁의 적절한 근거가 없을 시 근거 마련을 위한 기간 또한 고려하여 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주적 운영관리의 수준점검 및 개선방향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

-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4)** 행정직영의 경우 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하나, 자주적 운영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 필요
-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3)** 지자체 내 공동체 역량 강화 전담부서 신설 또는 기존 관련 부서와 연결 강조
-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2)** 운영주체로서 공동체가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보장 및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참고문헌

Davidson, Colin. H., Cassidy Johnson, Gonzalo Lizarralde, Nese Dikmen and Alicia Sliwinski. 2007. Truths and myths about community participation in post-disaster housing projects. *Habitat International* 31, no.1:100-115.
Lefebvre, H. 2003. *The Urban Revolution*. (R. Boanno, Tra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본 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수시과제로 수행한 김수진·진영호. 2020.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세종: 국토연구원'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정리한 것임.

김수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sookim@krihs.re.kr, 044-960-0677)
진영호 두리공간연구소 소장(jinsim99@empas.com)

